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4월 12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10년 4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0회 부천시의회(임사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0년 4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제안이유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개정 등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보훈명예수당 등을 신설하고 그 지급대상자, 지원금액, 방법 등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용어의 정리 및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보훈명예수당은 분기별 5만원,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을 지급함(안 제8조 신설).
- 다.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규정함(안 제9조 신설).

1) 보훈명예수당: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자

2) 사망위로금: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희생·공헌자 중 사망자

라. 보훈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마. 보훈명예수당은 지급 신청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하며, 매 분기 초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 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안 제11조 신설).

바.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 등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 및 환수조치와 반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신설).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집행부에서도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 사전에 논의가 있었는지?	○ 없었음.
○ 타 시·군에 비해 조례제정이 늦게 추진된 이유는?	○ 인식부족과 재정부담 때문에 다소 늦은감이 있음.
○ 지원대상을 65세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 제정부담이 있어 75세이상으로 하였는데 지원대상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이상 김관수 의원)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실질적으로 장례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사망위로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보다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수당성격에 부합함.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여러 가지 추이를 보며 보완하겠음.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 그러함. (이상 사회복지과장)

4. 토론요지

- 가. 반대토론 : 없음
- 나. 찬성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 관계법령”을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하고,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2.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자 중 해당단체에 등록하지 아니한 회원
제5조제6호 중 “행사시에는”을 “행사 시에는”으로 한다.

제7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8조를 15조로, 제9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0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65세 이상 분기 5만원(상이등급 1급1항·1급2항 중상이 국가유공자는 나이 제한 없이 지급)
2.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 15만원

제9조(지급대상) ① 제8조제1호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서 제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제외한다.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서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중 사망자로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당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④ 수당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대상자명부를 매 분기 개시 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 시장에게 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토 후 지급 여부를 결정 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지급 신청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하고, 소급적용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매 분기 초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의 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분기까지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제13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수급권자의 관리)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수급권자	성명		지급대상유형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p>「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부천시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 3. 대리인의 경우 증빙서류 1부.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자			
	지급대상유형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p>「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부천시장 귀하</p>				
<p>구비서류</p> <p>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p> <p>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p> <p>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사본 1부.</p> <p>(※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p>				<p>수수료</p> <p>없 음</p>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대상자 관리대장

일시	지급대상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지급계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대상자 관리대장

일시	지급대상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연락처	지급계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83호
의결 년월일	2010. 4. 26 (제160회)

제출년월일 : 2010. 4. 1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개정 등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보훈명예수당 등을 신설하고 그 지급대상자, 지원금액, 방법 등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용어의 정리 및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 나. 보훈명예수당은 분기별 5만원,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을 지급함(안 제8조 신설).
- 다.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규정함(안 제9조 신설).
 - 1) 보훈명예수당: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자

2) 사망위로금: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희생·공헌자 중 사망자

라. 보훈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마. 보훈명예수당은 지급 신청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하며, 매 분기 초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 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안 제11조 신설).

바.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 등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 및 환수조치와 반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신설).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 관계법령”을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하고,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

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2.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자 중 해당단체에 등록하지 아니한 회원

제5조제6호 중 “행사시에는”을 “행사 시에는”으로 한다.

제7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8조를 15조로, 제9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0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65세 이상 분기 5만원(상이등급 1급1항·1급2항 중상이 국가유공자는 나이 제한 없이 지급)
2.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 15만원

제9조(지급대상) ① 제8조제1호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친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서 제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제외한다.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부친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서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중 사망자로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당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④ 수당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대상자명부를 매 분기 개시 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 시장에게 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토 후 지급 여부를 결정 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지급 신청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하고, 소급적용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매 분기 초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 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의 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분기까지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제13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수급권자의 관리)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수급권자	성명		지급대상유형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p>「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부천시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사본 1부. 2. 본인통장사본 1부. 3. 대리인의 경우 증빙서류 1부.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자			
	지급대상유형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p>「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부천시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대상자 관리대장

일시	지급대상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지급계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희생·공헌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대상자 관리대장

일시	지급대상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연락처	지급계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u>국가보훈 관계법령</u>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국가보훈관계 법령</u> ----- ----- <u>필요한</u> ----- -----.</p>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p> <p>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p> <p>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p> <p>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u>공무수행</u></p> <p>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p> <p>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p> <p>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p>	<p>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2.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자 중 해당단체에 등록하지 아니한 회원
<p>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생략) 6.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7. · 8. (생략) 	<p>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현행과 같음) 6. ----- 행사 시에는 ----- 7. · 8.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제10조(수당 등의 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당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p> <p>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p> <p>④ 수당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대상자명부를 매 분기 개시 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 시장에게 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13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4조(수급권자의 관리)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생략)</p>	<p>제15조(민간의 참여조성) (현행 제8조와 같음)</p>
<p>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생략)</p>	<p>제16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현행 제9조와 같음)</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 1 7 조 (시 행 규 칙)</p> <p>-----</p> <p>-----필요한</p> <p>-----</p> <p>-----.</p>

<관계법령발췌서>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禮遇)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軍警)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송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3조 (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5조 (유족 등의 범위 <개정 2008.3.28>)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민주혁명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사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12.27, 1994.12.31, 1999.1.29, 2000.12.30, 2005.3.31>

제13조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6, 2005.3.31, 2007.1.3>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제4조 (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26>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치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엽제전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76조 (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